

은평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

1. 평가기준

- 가.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「은평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」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.
- 나.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,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.

평가항목	평가배점	
	1억원 이상	1억원 미만
사업수행능력평가	70점 (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× 70/100)	50점 (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× 50/100)
가격평가	30점 (가격평가점수 × 30/100)	50점 (가격평가점수 × 50/100)
총 계	100점	100점

- 다.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,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.
- 라.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, 수행기관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.

2. 유의사항

- 가.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,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,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나.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,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은평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,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, 수행기관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.

3.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

가. 사업수행능력평가

평가항목	배점범위	세부기준					비고	
1.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	30	• 산출기준 (기술사수×1.0)+(특급기술자수×0.8)+ (고급기술자수×0.6)+(중급기술자수×0.4)+ (초급기술자수×0.2)						
		6이상	6미만 ~5이상	5미만 ~4이상	4미만 ~3.4이상	미제출		
		30점	27점	24점	21점	0점		
2. 수행실적	20	•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(용역 준공) 실적						
		20건이상	20건미만 ~15건이상	15건미만 ~10건이상	10건미만 ~5건이상	5건미만 ~1건이상		미제출
		20점	18점	16점	14점	12점		0점
3. 업무중첩도	30	• 은평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						
	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 이하			
		30점	20점	10점	5점			
4. 신용도평가	20	• 신용평가등급						
		A-이상	BBB-이상	B-이상	CCC+이하	미제출		
		20점	18점	16점	14점	0점		
총 계	100							

- 1)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,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, 안전관리에 한한다.(중복 불인정하며, 교량 및 터널분야, 수리분야, 항만분야의 기술 인력은 제외한다.)
- 2)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(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초기점검,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)을 수행 완료(용역 준공)된 건축분야 실적(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)으로 평가한다.
- 3)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,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,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(원본대조필 날인)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.
- 4) 업무중첩도 평가는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은평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.
- 5)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,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.
 예) 제안가격: A기관/6회, B기관/3회, C기관/3회, D기관/5회
 배 점: B기관/30점, C기관/30점, D기관/10점, A기관/5점
- 6) 안전관리계획상의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항목 2번(수행실적)을 생략한다.

나. 가격평가

평가항목	배점범위	세부기준 및 배점		비 고
제안가격 입찰	100	평균가격 1번째 근접: 100점		
		평균가격 2번째 근접: 97점		
		평균가격 3번째 근접: 94점		
		평균가격 4번째 근접: 91점		
		평균가격 5번째 근접: 88점		
		평균가격 6번째 근접: 85점		
		평균가격 7번째 근접: 82점		
		평균가격 8번째 근접: 79점		
		평균가격 9번째 근접: 76점		
		평균가격 10번째 근접: 73점		
		평균가격 11번째 근접: 70점		
		평균가격 12번째 근접: 67점		
		평균가격 13번째 근접: 64점		
		평균가격 14번째 근접: 61점		
		평균가격 15번째 근접: 58점		
		평균가격 16번째 근접: 55점		
		평균가격 17번째 근접: 52점		
		평균가격 18번째 근접: 49점		
		평균가격 19번째 근접: 46점		
		평균가격 20번째 근접: 43점		

- 1)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,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.
예) 제안가격: A기관/100만원, B기관/110만원, C기관/100만원, D기관/120만원
배 점: B기관/100점, A기관/97점, C기관/97점, D기관/91점
- 2)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 (원단위 이하 절사)을 말한다.
- 3) 지정공고에 응한 수행기관이 2개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상의 안전점검비용에 근접한 순서로 평가한다.
- 4)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.
- 5)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.